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이유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해기사가 될 수 있는 특례 규정 중 「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외국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우리나라 해기사 자격 부여 특례 규정 중 「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제10조의2제1항).
- 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함(안 부칙).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를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로 하고, 안 제10조의2제2항 중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를 “제4조제1항에도”로 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는 한국선박의 선
박직원이 될 수 있
다.

<신 설>

② 「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
다고 인정하면 해

②

제4조 제1항에 도

③ (개정안과 같음)

당 <u>체약국</u> 의 해기	-- <u>체약국</u> 또는 당
사 면허증에 승무	<u>사국</u> -----
할 수 있는 것으로	-----
되어 있는 선박 및	-----
그 선박에서 수행	-----
할 수 있는 직무의	-----
범위에서 선박직원	-----
으로서 승무할 수	-----
있는 선박 및 그	-----
선박에서의 직무	-----
범위를 정하여 이	-----
를 인정(이하 “승무	-----
자격인정”이라 한	-----
다)하고, 승무자격	-----
증을 발급할 수 있	-----
다.	---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승무자격인정의	⑤ -----
유효기간은 5년으	-----
로 한다. 다만, 해	-----.
당 <u>체약국</u> 에서 해	- <u>체약국</u> 또는 당사
기사 자격을 잃은	국-----
때에는 그 때부터	-----
효력을 잃는다.	-----.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별 칙) -----	제27조(별 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9조(제10조의2 <u>제5항</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4. ----- <u>제6항</u> -----	4. (개정안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5. ~ 8. (개정안과 같음)
제28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별 칙) -----	제28조(별 칙)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3
------------	------

발의연월일 : 2024. 7. 23.

발의자 : 조경태 · 조정훈 · 김성원

김상훈 · 강선영 · 김대식

정연욱 · 조지연 · 박준태

박성훈 · 곽규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 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 2제2항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 가. 외국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우리나라 해기사 자격 부여 특례 규정 중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제10조의2제1항).
- 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함(안 부칙).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를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체약국”을 “체약국 또는 당사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체약국”를 “체약국 또는 당사국”로 한다.

②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혜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제27조제4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p>	<p>-----.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9조(제10조의2<u>제5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p>	<p>4. ----- <u>제6항</u>----- ----- ----- ----- ----- ----- ----- ----</p>
<p>5. ~ 8. (생 략)</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28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p>	<p>제28조(별칙) ----- -----. -----.</p>
<p>1. 제9조(제10조의2<u>제5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p>	<p>1. ----- <u>제6항</u>----- ----- ----- ----- ----- ----- -----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